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정	2013. 3. 25.
개정	2016. 10. 17.
개정	2017. 7. 24.
개정	2018. 8. 2.
개정	2019. 7. 22.
전면개정	2021. 4. 21.
개정	2021. 6.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대표의 공정한 선발 및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대표”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2. “국가대표 지도자”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등을 지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대한컬링연맹(이하 “연맹”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하며,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의 구성과 역할에 따라 총감독, 감독, 코치로 구분한다.
3. “국가대표 선수”는 체육회 또는 연맹이 국제종합경기대회(이하 “종합대회”라 한다) 또는 국제종목별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 이하 “종목별대회”라 한다)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4. “경기임원”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트레이너를 말한다.
5. “트레이너”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의무, 체력, 기술, 심리 및 영양분석, 훈련장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경기경력”이란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선수로 등록하고 활동한 경력으로 해당 연맹이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7. “경기 지도경력”이란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하고 선수를 지도한 경력으로 해당 연맹이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8. “전문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자격 보유자를 말한다.
9. “강화훈련”은 회원종목단체에서 선발한 선수 및 지도자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촌 등에서 실시하는 합숙훈련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맹에서 실시하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선발 절차)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은 공개 선발방식으로 하되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팀에 소속된 지도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며, 위원회 의결 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공석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는 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가대표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고 국가대표 지도자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추천하면 연맹의 이사회에서 선발하고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 ② 트레이너는 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트레이너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고 트레이너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추천하면 연맹의 장이 선발하고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 ③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를 외국인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5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연맹의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연맹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국가대표 지도자 중 총감독과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켈링 지도경력 5년 이상과 켈링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켈링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켈링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켈링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켈링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켈링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켈링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켈링 지도경력 있는 사람
- ③ 국가대표 지도자 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컬링 지도경력 2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컬링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컬링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컬링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안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컬링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컬링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컬링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컬링 지도경력 있는 사람

제6조(국가대표 트레이너 자격) ① 트레이너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 및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권장한다.

제7조(경기임원의 선발 절차) ①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기임원은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중에서 연맹의 장이 추천하면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경기임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체육회와 사전 협의 후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 방법은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맹의 장이 한다.
 ③ 제1항 이외의 경기임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체육회 강화훈련 지도자 선발 절차에 따른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맹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1.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프로종목의 지도자
2. 국가대표 선발을 선수와 지도자를 포함한 팀으로 선발하는 경우
3. 체육회 강화훈련 지도자 정원이 없고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특별히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4.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 확정된 이후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공개선발을 할 수 없는 경우

- ④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제3항 제1호의 경기임원을 선발할 경우 사전에 선발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심의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 ⑤ 경기임원을 선발한 때에는 즉시 선발사유를 포함하여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이외의 종합대회의 경기임원 선발은 연맹 경기력향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맹의 장이 결정한 후 체육회에 추천한다.
- ⑦ 종목별대회의 경기임원 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연맹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대표 선수 선발 절차) ① 국가대표선수는 연맹이 사전에 정한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발일정 등 세부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국가대표선수 선발 기준은 선발일 2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연맹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세계컬링연맹(WCF)의 대회 관련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거나 종목 특성에 근거하여 대관 등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이때 선발기준 공지 지연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 대상이 되는 선수의 지도자 등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제1항의 위원회 참석위원은 회의록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
- ⑤ 부상, 경기력 부진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국가대표선발전 출전 선수 중)에 따른 선수 교체 시 팀의 원 소속 선수를 우선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체 시 결격사유 및 교체 선수의 경기력 등을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이상유무가 없을 경우 교체 선발한다.
- ⑥ 선발기준에는 선발방식, 선발일정, 추천선발의 요건, 비율 및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사전에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⑦ 추천된 팀은 추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대회성적, 경기력, 위원회 회의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국가대표 선수 선발방법) ①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한 남자팀, 여자팀, 믹스더블 팀을 우선적으로 당해년도 국가대표선수로 추천 선발한다.

- ② 국가대표 선수 추천 선발은 국가대표 선발전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단, 4인조의 경우 4인이 동일인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믹스더블의 경우 2인이 동일인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③ 국가대표선발전 출전자격은 팀 포인트 제도를 적용한다.
- ④ 연합팀 구성이 가능한 각 대표선수 선발 원칙(주니어, U대회 등의 특수한 대회)은 각 대회 요강에 따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국가대표선발 포인트 획득 시 시즌 첫 대회를 기준으로 등록 및 참가한 선수에서 동일한 선수 3명 이상이 유지될 경우 동일 팀으로 간주하며, 동일 소속의 복수의 팀이 참가할 경우 시즌 첫 대회를 기준으로 한 명이라도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팀으로 간주한다. 단, 믹스더블 종목의 경우 각 대회요강에 따라 소속이 다른 선수로 구성된 팀도 참가 가능하며 2명의 선수가 유지되어야 동일팀으로 인정한다.
- ⑥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권은 출전 당시 소속팀에 부여한다.
- ⑦ 국가대표 선발전의 개최시기, 참가자격, 경기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후 이사회가 의결한다.
- ⑧ 국가대표에 추천 및 선발된 선수와 지도자가 임의로 사임할 경우 향후 3년간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를 제한한다. 단, 믹스더블 지도자 사임과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국가대표 선수 자격) ① 국가대표 선수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종목별 국제연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가대표 선수는 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연맹의 소속 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연맹,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

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1천만원 초과 of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1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신청) ① 연맹의 장은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연맹의 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연맹에 등록된 선수
2.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팀의 장

제12조(자료의 보관)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선발결과 기록지, 회의 자료 및 회의록 등)는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 국가대표 선수단의 임기는 다음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 전월까지로 한다.

제14조(국가대표 및 트레이너의 임무)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2. 국가대표로 출전한 대회의 결과보고 및 선수 평가
3. 국가대표 선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4.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훈련제외 건의
5. 국가대표 선수의 국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 시 인솔
6.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의 경기규정 및 소청규정의 숙지와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7. 국가대표 선수의 합숙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
8. 기타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등

② 트레이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2. 의무, 체력 트레이너는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3. 영상 및 전략분석 트레이너는 훈련 및 경기 분석결과 보고
4.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5.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③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 지도자가 계획한 훈련 참여
2.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3. 국가대표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4.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금지

제15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훈련과 대회에 임하고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삼가고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국가대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대표의 보호 및 지원) 체육회와 연맹은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여건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적절한 수준의 훈련수당 지원
2.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절차 마련

제17조(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 ① 연맹은 체육회의 동 규정을 준용하여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 반드시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 트레이너의 선발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연맹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제·개정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개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후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6개월 이내에 제·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유에 대해 체육회와 협의 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대표 훈련의 관리) 국가대표 훈련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 '강화훈련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이사회(2013.03.25.)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구)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전 시행일 전에 수행된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② 국가대표 선발전(4인조 남·여) 참가대상은 2018-2019시즌에 한하여 제10차 관리위원회(2018. 5. 4.) 의결결과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대회요강에 명시하여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1. 2018. 3.31일 임기만료 국가대표 : 1팀

2. 해당년도 승인대회 획득점수 최종순위 결과 : 6팀(일반부/고등부 각 1위~3위팀)

3. 2018-2019시즌 등록팀(일반부, 고등부) 중,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팀간 예선대회 결과 1위팀 : 1팀(예선대회에 지도자는 한 팀만 출전할 수 있음)

③ 2019년도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포인트는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연맹이 관리단체지정에서 해제되어 연맹의 권리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관리위원회가 총회 및 이사회 기능을 대신한다.

부 칙(2019.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20년도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포인트의 적용은 2019년 국가대표 선발전 이후 대회부터 적용한다.

② 연맹이 관리단체지정에서 해제되어 연맹의 권리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연맹 관리위원회가 총회 및 이사회 기능을 대신한다.

부 칙(2021.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21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은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포인트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으므로 포인트 적용 없이 모든 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적용) ① 이 규정 제10조제9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9.6.25.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제10조제10호는 형법 제246조, 제247조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3.4.5.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부 칙(2021. 6.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021-2022 국가대표 선발방식

1. 장소 : 유치신청서를 취합 후 경기력향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2. 선발 방식 : 최대 3차전 선발

1) 1차

- 참가 팀

	내용		비고
	4인조	믹스더블	
오픈	참가제한 없음		동일소속 제한 없음

- 경기방법

1차전	비고
참가팀 수에 따른 경기방식 결정	- 1~20팀 : 2 개조 라운드 로빈 - 21~30팀 : 4 개조 라운드 로빈 - 30팀 이상 : 트리플 넥아웃

- 2) 2차 : 1차전에서 4위팀까지 참가자격 부여, 더블라운드방식으로 1위팀 선정
* 1, 2차전 1위팀이 동일팀이면 국가대표팀 확정, 1위팀이 2개팀이면 3차전 진행
단, 믹스더블의 경우 1차전에서 8위팀까지 참가자격 부여,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1위팀 선정

- 3) 3차 : 1, 2차전 1위팀간 7전4선승제로 국가대표팀 최종 확정

- ※ 2, 3차전 출전팀은 1차전 출전 당시의 동일한 선수(4인조 4명, 믹스더블 2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 ※ 믹스더블 국가대표 선발전은 4인조 국가대표 선발 종료 2주 후 다른 경기장에서 실시한다.